

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

공공 R&D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국가 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5. 12.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I 사업 개요

1. 사업목적

- NTB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 시장출시 가능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

2. 사업내용

-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성능 인증·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(약 16개 과제)

3. 지원규모 및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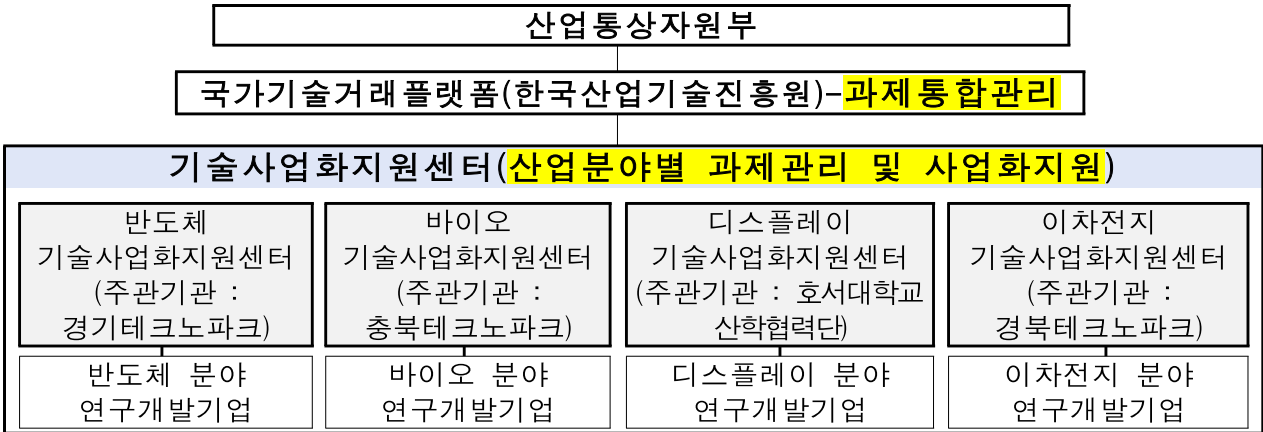
- 정부출연금 총 16억원
 - 4개 중점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 지원센터에서 각 4개 과제 지원
 - 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중 1개를 선택
 -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, 기업부담금 없음(단 부가가치세 별도)
- 사업기간 : 2025년 6월 ~ 2025년 12월(개발기간 : 2025년 6월 ~ 11월(6개월간))

4.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5. 지원분야

-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중 1개 분야를 선택
 - * 산업 분야별 각 4개 과제 지원 예정

6. 추진체계



II 지원 내용

1. 지원대상

-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NTB 등록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'25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기업

2. 지원내용

- (직접지원) 개발품의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성능인증·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에 대한 기업 소요자금 지원

세부분야	지원내용
금형개발 (시제품제작용)	- 시제품제작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금형설계/제작지원 등 [기구설계, 설계검증, Mock-up 포함]
시제품제작	- 개발제품의 사업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
제품성능향상	-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기술연계·공정개선, 국산화, 신제품 공동기술개발
제품고도화	- 부품, 설계 등의 성능 및 생산성 향상, 품질확보
인증	- 기업 및 제품 안전성, 신뢰성 등 국내외 인증
특허지원	- 국내외 특허 출원, 상표, PCT 등

* 인건비 및 간접비 제외, 기업별 직접지원 금액 1억원 내외

3. 지원자격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
 - 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 - ** 접수마감일 기준 **법인만 신청가능**(개인사업자 제외)
 - ***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” 보유기업

III 과제 신청

1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5. 12(월) ~ 5. 28(수) 18:00까지
- 접수처 : 4개 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지원센터별 이메일 접수
 - 반도체 : 반도체기술사업화지원센터(경기테크노파크, kkchoi@gtp.or.kr)
 - 바이오 : 바이오기술사업화지원센터(충북테크노파크, eybaek@cbtp.or.kr)
 - 디스플레이 : 디스플레이기술사업화지원센터(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, sio2@hoseo.edu)
 - 이차전지 : 이차전지기술사업화지원센터(경북테크노파크, jwh333@gbtp.or.kr)

2. 신청서류

* 신청 서류는 각 파일명에 번호(1~10) 기재 후 제출(전체 필수 제출)

번호	서류명	파일 형태	비고	서식
1	사업계획서	HWP		서식-1
2	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	서식-2
3	대표자 참여의사 확인서	PDF	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	서식-3
4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PDF	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	서식-4
5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PDF	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	서식-5
6	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	
7	과제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	
8	기술 이전 계약서	PDF		
9	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	PDF		
10	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	PDF	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	서식-6

3. 문의처

구 분	담 당	연락처
사업 총괄 문의	국가기술거래플랫폼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	☎ 02-6009-3601 ☎ 02-6009-3609
산업분야별 지원 문의	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- (주관기관) 경기테크노파크	☎ 031-500-3037 ☎ 031-500-3039
	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- (주관기관) 충북테크노파크	☎ 043-270-2278
	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- (주관기관)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	☎ 041-523-1792 ☎ 041-523-1793
	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- (주관기관) 경북테크노파크	☎ 053-819-3052 ☎ 053-819-3053

VI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

1. 사전 검토

- 접수과제의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
 - 기술이전계약 완료 여부
 -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
 -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납부 등)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

2.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
- (위원회 구성) 산업 분야별 전문가 7명 내외 구성(예정)
 - * 평가위원 제척 기준(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 적용)
- (평가위원회 방식) 발표평가
 -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(Q&A) 중심으로 진행
 - 발표는 주관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

3. 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이전기술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	20
개발 제품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진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개발 제품의 필요성, 중요성 	20
기업 사업화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간 내 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의 역량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·구체성 등 사업화 준비 수준 	30
시장 유망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 제품의 국내·외 시장 현황 및 전망 규모 및 확장성 등 개발품의 사업화 유망성 	30
합 계		100

4. 평가 결과 도출

- **(평점)**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'산술평균점수'를 산출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- **(선정)**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“지원대상”으로, 70점 미만인 과제는 “지원제외”로 구분(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)

VII 추진 일정(안)

절 차	내 용	비 고	일 정
① 지원사업 공고	<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>	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	'25. 5월
↓			
② 신청접수	<신청 서류 제출>	기술사업화지원센터	'25. 5월
↓			
③ 과제 평가 및 선정	<선정평가위원회 개최>	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	'25. 6월
↓			
④ 협약	<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>	기술사업화지원센터 ↔ 수행기업	'25. 6월
↓			
⑤ 과제수행	< 시장출시가능제품 과제 수행>	기술사업화지원센터 ↔ 수행기업	~'25. 11월
↓			
⑥ 성과평가 (진도점검)	<사업 결과 및 성과평가(진도점검)>	수행기업	'25.12월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III 근거법령 및 규정

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/ 동법 시행령 / 동법 시행규칙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, 연구개발비 사용기준

IX 유의사항 등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,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
-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
-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,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전문기관(KIAT)의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
-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 - 신청서류에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
 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사업의 기본목적,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